#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534

발의연월일: 2024. 9. 2.

발 의 자:서미화・복기왕・황정아

김선민 • 권향엽 • 박희승

박지원 · 김영환 · 이광희

채현일 · 송재봉 · 윤건영

강준현 · 박홍배 · 조 국

이병진 의원(16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필수적으로 국선보조인이 선정되고, 소년에게 신체적·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,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보조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적으로 국선보조인이 선정될 수 있음.

그러나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. 이에 따르면 소년의 경우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직접 변호인 등을 선임하는 것이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국선보조인의 선임은 소년의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임.

이에 소년 보호사건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2제1항·제2항).

###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법원은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1. 소년에게 신체적 · 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
- 2. 빈곤이나 그 밖에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
- 3.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선보조인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송치·통고되는 소년 보호사건부터 적용한다.

#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혀 행

개 정 안

제17조의2(국선보조인)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2(국선보조인) ① 법원은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

- 1. 소년에게 신체적·정신적 장 애가 의심되는 경우
- 2. 빈곤이나 그 밖에 사유로 보 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
- 3.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 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 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 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.

- 1. 소년에게 신체적·정신적 장 애가 의심되는 경우
- 2.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

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	<u>-</u>
3.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	<u>조</u>
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	<u>경</u>
<u> </u>	

③ (생 략)

③ (현행과 같음)